

『1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안내

(Ver 20.01)



구 분	주 요 내 용
근거 법령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법 시행령 제23조(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시험방법, 시험의 공고 및 합격자 결정 등) •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및 수첩발급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응시 자격	<p>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p> <p>나.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소방안전 관련 학과(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p> <div style="background-color: #e0f0ff; padding: 5px;"> <p>「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안전 관련 학과 및 소방관련 학과 등에 관한 기준」</p> <p>제2조(소방안전 관련 교과목)</p> <p>1. 소방안전관리론(소방학개론, 재난관리론, 소방관계법규를 포함한다) 2. 소방유체역학</p> <p>3. 위험물질론 및 억제화학 6. 일반건축공학 9. 일반기계공학</p> <p>4.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7. 일반전기공학 10. 화재유동학(열역학, 열전달을 포함한다)</p> <p>5. 방화 및 방폭공학 8. 가스안전 11. 화재조사론</p> <p>제3조(소방안전 관련 학과)</p> <p>1. 전기공학과(전기과, 전기설비과, 전자공학과, 전기전자과, 전기전자공학과, 전기제어공학과를 포함한다)</p> <p>2. 산업안전공학과(산업안전과, 산업공학과, 안전공학과, 안전시스템공학과를 포함한다)</p> <p>3. 기계공학과(기계과, 기계학과, 기계설계학과, 기계설계공학과, 정밀기계공학과를 포함한다)</p> <p>4. 건축공학과(건축과, 건축학과, 건축설비학과, 건축설계학과를 포함한다)</p> <p>5. 화학공학과(공업화학과, 화학공업과를 포함한다)</p> <p>6. 학군 또는 학부제로 운영되는 대학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 학과에 해당하는 학과</p> <p>제3조의2(소방안전관리학과)</p> <p>1. 소방안전관리과 2. 소방시스템과 3. 소방학과 4. 소방환경관리과 5. 소방공학과 6. 소방행정학과</p> </div> <p>다. 소방행정학(소방학, 소방방재학을 포함한다) 또는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p> <p>라.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 5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p> <p>마.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p> <p>바.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강습을 수료한 사람</p> <p>사.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5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p> <p>아.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5년 미만의 실무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합산한다)이 있는 사람</p> <p>※ “실무경력”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을 말하며, 같은 조 제3항(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자 등)에 따라 선임된 경력은 제외됩니다.(시행 2015.1.8.)</p> <p>※ 상위 시험응시자격으로 하위 시험 응시가능</p>

시험 정보	시험명	1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일정 및 장소	사이트 시험일정 참고 (안전원사이트 내 소방안전교육>시험접수>1급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일정)																																									
시험 정보	시험과목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 colspan="3">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1과목</td> <td colspan="3">소방관계법령</td> </tr> <tr> <td colspan="3">건축관계법령</td> </tr> <tr> <td colspan="3">소방학개론</td> </tr> <tr> <td colspan="3">화기취급감독(위험물·전기·가스 안전관리 등)</td> </tr> <tr> <td rowspan="5">2과목</td> <td colspan="3">종합방재실 운용</td> </tr> <tr> <td colspan="3">소방시설(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의 구조·점검, 실습, 평가</td> </tr> <tr> <td colspan="3">소방계획 수립 이론·실습·평가</td> </tr> <tr> <td colspan="3">작동기능점검표 작성 실습·평가</td> </tr> <tr> <td colspan="3">구조 및 응급처치 이론·실습·평가</td> </tr> <tr> <td colspan="3">소방안전교육 및 훈련 이론·실습·평가</td> </tr> <tr> <td colspan="3">화재대응 및 피난 실습·평가</td> </tr> </tbody> </table>			구분	내용			1과목	소방관계법령			건축관계법령			소방학개론			화기취급감독(위험물·전기·가스 안전관리 등)			2과목	종합방재실 운용			소방시설(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의 구조·점검, 실습, 평가			소방계획 수립 이론·실습·평가			작동기능점검표 작성 실습·평가			구조 및 응급처치 이론·실습·평가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 이론·실습·평가			화재대응 및 피난 실습·평가		
		구분	내용																																								
		1과목	소방관계법령																																								
			건축관계법령																																								
			소방학개론																																								
화기취급감독(위험물·전기·가스 안전관리 등)																																											
2과목	종합방재실 운용																																										
	소방시설(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의 구조·점검, 실습, 평가																																										
	소방계획 수립 이론·실습·평가																																										
	작동기능점검표 작성 실습·평가																																										
	구조 및 응급처치 이론·실습·평가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 이론·실습·평가																																											
화재대응 및 피난 실습·평가																																											
※ 근거 :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및 수첩발급 등에 관한 기준 고시」 별표																																											
시험 방법 및 시간	<table border="1"> <thead> <tr> <th>시험 방법</th> <th>배 점</th> <th>문항수</th> <th>시간</th> </tr> </thead> <tbody> <tr> <td>객관식(선택형, 4지 1선택)</td> <td>1문제 4점</td> <td>50문항 (과목별 25문항)</td> <td>1시간(60분)</td> </tr> </tbody> </table>				시험 방법	배 점	문항수	시간	객관식(선택형, 4지 1선택)	1문제 4점	50문항 (과목별 25문항)	1시간(60분)																															
	시험 방법	배 점	문항수	시간																																							
객관식(선택형, 4지 1선택)	1문제 4점	50문항 (과목별 25문항)	1시간(60분)																																								
※ 1)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근거 : 시행규칙 제34조(시험방법, 시험의 공고 및 합격자 결정 등)																																											
합격자 결정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70점 이상 득점한 사람																																										
합격자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험 및 채점 완료 시 지정된 게시판에 합격자를 발표(게시)합니다. 시험응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개별적으로 본인의 점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 발급	합격자에 한하여 「1급 소방안전관리자 수첩」을 발급해 드립니다.																																										
시험 접수	접수방법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시도지부 방문접수 (근무시간 : 9:00 ~ 18:00)</th> <th>안전원 사이트 접수 (www.kfsi.or.kr)</th> </tr> </thead> <tbody> <tr> <td>접수시 관련 서류</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응시료 1만원(현금,카드 등) 사진 1매 응시자격별 증빙서류(해당자 한함)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응시수수료 결제 (신용카드, 무통장입금) ※증빙자료 접수 불가 </td> </tr> <tr> <td>증빙이 불필요한 경우</td> <td>가 능</td> <td>가 능</td> </tr> <tr> <td>증빙이 필요한 경우 (최초 학력,경력,학점력의 경우)</td> <td>가 능</td> <td>불 가 (사전 서류심사 필요)</td> </tr> </tbody> </table>			구 분	시도지부 방문접수 (근무시간 : 9:00 ~ 18:00)	안전원 사이트 접수 (www.kfsi.or.kr)	접수시 관련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응시료 1만원(현금,카드 등) 사진 1매 응시자격별 증빙서류(해당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응시수수료 결제 (신용카드, 무통장입금) ※증빙자료 접수 불가 	증빙이 불필요한 경우	가 능	가 능	증빙이 필요한 경우 (최초 학력,경력,학점력의 경우)	가 능	불 가 (사전 서류심사 필요)																											
		구 분	시도지부 방문접수 (근무시간 : 9:00 ~ 18:00)	안전원 사이트 접수 (www.kfsi.or.kr)																																							
		접수시 관련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응시료 1만원(현금,카드 등) 사진 1매 응시자격별 증빙서류(해당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응시수수료 결제 (신용카드, 무통장입금) ※증빙자료 접수 불가 																																							
		증빙이 불필요한 경우	가 능	가 능																																							
		증빙이 필요한 경우 (최초 학력,경력,학점력의 경우)	가 능	불 가 (사전 서류심사 필요)																																							
※ 학력, 경력, 학점력으로 시험응시한 사람은 동일한 시험에 대하여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인터넷접수 가능																																											
[접수시 주의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정된 일시 및 장소 외에는 일체 접수하지 않습니다. 접수된 응시원서,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시험일정 변경 및 응시수수료 환불신청은 시험 전 근무일 근무시간까지 가능하며 시험당일 이후에는 일정변경 및 환불신청이 불가합니다.(결시자 포함) 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응시원서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사항의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달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수수료	응시 수수료 : 10,000원 ※ 계산서는 현금(무통장입금 포함)으로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발급됩니다.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에는 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일정변경	해당시험 전일 근무시간까지 일정변경 가능									
시험 접수	제출서류	붙임 참조									
	환불 규정	<table border="1"> <thead> <tr> <th>환불 기준</th> <th>금 액</th> </tr> </thead> <tbody> <tr> <td>응시 수수료를 과오납 한 경우</td> <td>과오납 금액</td> </tr> <tr> <td>시험시행 전일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td> <td>전 액</td> </tr> <tr> <td>시험시행일 부터</td> <td>환불불가</td> </tr> </tbody> </table>		환불 기준	금 액	응시 수수료를 과오납 한 경우	과오납 금액	시험시행 전일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전 액	시험시행일 부터	환불불가
		환불 기준	금 액								
		응시 수수료를 과오납 한 경우	과오납 금액								
시험시행 전일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전 액										
시험시행일 부터	환불불가										
※ 수험원서 접수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신청은 인터넷으로 가능											
응시표 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응시표는 방문접수 시 접수 현장에서 출력, 인터넷접수의 경우 접수가 완료되면 응시자가 출력 • 시험응시표는 시험 당일까지 응시자가 인터넷으로 재 출력 가능 										
시험 응시자 유의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응시자는 응시표에서 정한 입실 시간(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입실)까지 응시표, 신분증, 필기도구(컴퓨터용 흑색 수성 싸인펜), 사진(미제출자에 한함)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시험감독관의 시험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2. 응시표와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을 경우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신분증의 범위 : 공무원증,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발급확인서 포함),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학생증(사진이 부착된 학생증에 한함)에 한함 3.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경우 시험 시행일 전에는 안전원 홈페이지(인터넷접수자) 또는 해당 시도지부에서, 시험당일에는 시험감독관의 사전확인을 받아야 응시가 가능합니다. 이때 응시자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4. 시험 OMR 답안카드 작성은 컴퓨터용 흑색 수성 싸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5. 답안카드에 시험교시, 응시번호, 성명 등을 기재·표기하지 않거나 틀리게 작성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6. 시험시간 중에는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일체 사용할 수 없습니다. 7. 시험실내에는 어떠한 통신장비(휴대전화기, 무선호출기, PDA 등) 및 MP3, 녹음기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휴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8. 시험문제지 및 답안지는 공개하지 않으며, 시험종료 후에는 답안카드와 함께 문제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문제지를 반납하지 않거나 응시표 등에 문제를 옮겨 적어 가는 경우는 부정행위로 처리합니다. 9.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2년간 소방안전관리(구 방화관리)에 관한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10. 시험 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사용하거나 퇴실할 수 없으며, 시험 종료 30분전부터 답안 제출 후 중도 퇴실할 수 있습니다. 11. 시험장 내에서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시험장의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12. 응시자는 시험시행 공고문, 응시표,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을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시험접수 및
결제방법
안내

1. 안전원 사이트 로그인
2. 안전원 사이트 “소방안전교육-시험신청” ⇨ “시험일정” 클릭 ⇨ 응시하고자하는 지부 시험날짜 클릭 ⇨ 시험신청자 정보입력 ⇨ 신용카드 결제 또는 LG데이콤 무통장 계좌할당 및 입금 ⇨ 시험신청 완료

시험과정	구분	시험일정	시험안내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특급시험	시험일정	HWP 시험안내	PDF 시험안내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재시험	시험일정	HWP 시험안내	PDF 시험안내
	학-경력	시험일정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재시험	시험일정	HWP 시험안내	PDF 시험안내
	학-경력	시험일정		
3급 소방안전관리자	재시험	시험일정	HWP 시험안내	PDF 시험안내
	학-경력	시험일정		

※ 원서접수 기간 중에만 시험일정이 안전원 인터넷에 등재됩니다.

지부별
연락처

- 근무시간 : 09:00 ~ 18:00
- 지부별 연락처

지부(지역)	연락처	지부(지역)	연락처
서울지부(서울 영등포)	02-2671-9076~8	부산지부(부산 금정구)	051-553-8423~5
인천지부(인천 서구)	032-569-1971~2	대구경북지부(대구 중구)	053-429-6911,7911
경기지부(수원 팔달구)	031-257-0131~3	울산지부(울산 남구)	052-256-9011~2
경기북부지부(경기 파주시)	031-945-3118,4118	경남지부(창원 의창구)	055-237-2071~3
대전충남지부(대전 대덕구)	042-638-4119,7119	광주전남지부(광주 광산구)	062-942-6679~81
충북지부(청주 서원구)	043-237-3119,4119	전북지부(전주 덕진구)	063-212-8315~6
강원지부(횡성군)	033-345-2119~2120	제주지부(제주시)	064-758-8047 064-755-1193

[붙임] 시험접수 관련 제출서류

○ 기본 제출서류

- ① 시험응시원서 1부
 - ② 사진 1매(가로3.5cm×세로4.5cm)
 - ③ 실무경력관련 증빙서류 각 1부(“유형별 제출서류” 참고)
 - ④ 선임된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 특·1·2급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 ③, ④항은 경력시험접수자 중 처음으로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 한함

○ 유형별 제출서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실무경력(선임경력)사항 확인이 필요한 경우

1. 선임 및 해임여부가 기재된 수첩을 통해 경력기간 증빙이 가능한 경우(①~②제출)
 - ① 서류심사 신청서 1부 **[별지 1호] 서식**
 - ②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수첩(또는 해당 선임자격증) 사본 1부(원본지참)
2. 선임여부는 확인되나 경력기간 증빙이 필요한 경우(①~②제출)
 - ① 서류심사 신청서 1부 **[별지 1호] 서식**
 - ②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 이수확인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경력(재직) 확인서 **[별지 2호] 서식**
3. 선임여부 및 경력기간의 증빙이 모두 필요한 경우(①~③제출)
 - ① 서류심사 신청서 1부 **[별지 1호] 서식**
 - ②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 이수확인 또는 4대보험가입증명서 중 하나
 - ③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경력(재직) 확인서 1부 **[별지 2호] 서식**

학력 확인이 필요한 경우

1. 졸업(또는 학위) 증명서 1부
2. 졸업증명서에 기재된 학과명이 관련고시의 학과명과 동일한 경우 : 졸업(또는 학위) 증명서
3. 졸업증명서에 기재된 학과명이 관련고시의 학과명과 다른 경우(①~②제출)
 - ① 졸업(또는 학위) 증명서 1부
 - ② 동일학과 인정확인서(안전원양식) 및 동일학과 인정 검토 의견서(안전원양식) 각 1부

※ 성적증명서(이수과목 확인용)를 동일학과 인정 검토의견서(별지4호 서식)의 첨부로 제출
⇒ **[별지 3호] 및 [별지 4호]서식**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 이수 확인이 필요한 경우

1. 졸업(또는 학위) 증명서 1부
2. 이수과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성적증명서 등) 1부
 - ① 1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접수 :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 12학점 이상 이수
 - ② 2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접수 :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 6학점 이상 이수

시험응시자 증빙서류 제출시 유의사항

1. 모든 증빙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함. 단, 관공서 팩스민원 또는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증명서는 원본으로 인정함
2. 증빙서류 중 안전원 전산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한 것으로 간주함.
예)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증빙서류, 실무교육 이수확인서
3. 경력사항에 대해서 유선 또는 문서 등으로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허위 사실이 확인시 시험응시가 불가함
4. 2개 이상의 대상물에서 근무한 경우 소방안전관리(보조)자 경력(재직) 확인서는 대상물별 대표자로부터 각각 발급 받아야 함

수험번호	-
------	---

<input type="checkbox"/> 특급 <input type="checkbox"/> 1급 <input type="checkbox"/> 2급 <input type="checkbox"/> 3급	소방안전관리자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	------------------------------

<input type="checkbox"/> 수험자 서약사항

본인은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을 응시함에 있어 응시자격증빙서류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며 이 서약서에 첨부된 증빙서류 및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함은 물론 형사처벌도 감수할 것을 명심하고 신청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수험자 기재사항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	--	------	-------

전화번호	휴대폰 :	연락처 ☎ :
------	-------	---------

이 메 일	
-------	--

제출서류 내역	<input type="checkbox"/> 자격증 또는 자격수첩 사본(원본지참) <input type="checkbox"/> 선임(경력기간)확인 공적서류 <input type="checkbox"/>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 이수확인 <input type="checkbox"/>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경력(재직) 확인서 <input type="checkbox"/> 4대 보험가입증명서(납입사실 명시) <input type="checkbox"/>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특급 응시자에 한함) <input type="checkbox"/> 기타 증빙서류 (_____)
------------	---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한국소방안전원장 귀하	

동일학과 인정 확인서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학교명		학과명	학과	학번	
졸업일자	년 월 일		학위번호		

※ 상기 응시자가 졸업한 학과와 아래 관련고시의 학과명이 동일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학과명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동일학과 인정범위는 소방방재청 고시

「소방관련 교과목소방안전관련학과 및 소방관련학과등에 관한 기준」에 의함

1. 소방안전관리학과(소방안전관리과, 소방시스템과, 소방학과, 소방환경관리과, 소방공학과 및 소방행정학과를 포함한다)
2. 전기공학과(전기과, 전기설비과, 전자공학과, 전기전자과, 전기 및 전자공학과, 전기제어공학과를 포함한다)
3. 산업안전공학과(산업안전과, 산업공학과, 안전공학과, 안전시스템공학과를 포함한다)
4. 기계공학과(기계과, 기계학과, 기계설계학과, 기계설계공학과를 포함한다)
5. 건축공학과(건축과, 건축학과, 건축설비학과, 건축설계학과를 포함한다)
6. 화학공학과(공업화학과, 화학공업과를 포함한다)
7. 학군 또는 학부제로 운영되는 대학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 학과에 해당하는 학과

상기자가 졸업한 () 과)는 동일학과 인정범위의 소방관련학과 중 () 과)와 동일한 학과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학(교·원) 총장(또는 교무처장)

(직인)

붙임 : 동일학과 인정 검토의견서 1부.

한국소방안전원장 귀하

동일학과 인정 검토의견서

- 학교명 :
- 성 명 :
- 학위취득일자 :
- 응시자의 졸업 학과명 :
- 동일학과로 인정받고자 하는 학과명 :

가. 응시자 졸업학과 교육과정에 대한 설명 (교과목 등으로 설명)	나. 동일학과로 인정받고자하는 해당학과 교육과정에 대한 설명 (교과목 등으로 설명)	동일학과 인정에 대한 의견
		※ “가” 및 “나”항과 첨부 성적 증명서 이수과목을 참조하여 기술
※ 기타 의견		

응시자 졸업학과 학과장 확인 :

직인

첨부 : 이수과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수과목 확인용, 성적증명서 등) 1부.